

루리 위키 > 가이드 · 고민 해결

홈 > 고민 해결

루리의 줍줍 · 응모·실무 가이드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분과 사망보험금...

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구분과 사망보험금 상속세·증여세: 「보험금 상속재산여부 문의」부터 「보험료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시 증여 문제」까지

루리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는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실제로 냈는지」로 먼저 살펴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 쟁점이 생겨요. 개별 금액은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는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실제로 냈는지」로 먼저 살펴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고,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증여세 쟁점이 생겨요. 개별 금액은 세무서·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2026-10-30 기준 국세청, 금융감독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민법) 원문을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 법률·세무·금융 상담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과세 여부와 세액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숫자 예시는 모두 가상 예시예요.

1. 1.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무엇이 다를까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용어 안내는 세 역할을 이렇게 풀이해요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contentsSln=609&menuNo=300017>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contentsSln=609&menuNo=300017)).

역할	뜻	한 줄 포인트
보험계약자	계약의 주체가 되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계약 변경·수익자 지정의 권한이 있어요
피보험자	계약이 보장하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사망보험이면 이 사람이 사망해야 보험금이 나가요
수익자	사고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누구로 적었는지가 상속 문제를 좌우해요

상법 제733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제1항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요(<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3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300000>)). 또 상법 제73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그 사람이 계약 체결 때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정해요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1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100000>)).

2. 「보험금 상속재산여부 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금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한 것이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해요. 계약자가 따로 있어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고 같은 규정을 적용해요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08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0800000>)). 국세청 안내도 같은 문구로 설명해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50&mi=652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50&mi=6522>)).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은 보험금 총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해요(<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 수익자가 상속인이란도 수익자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상속공제 적용 범위나 세액은 이번에 원문을 열어 보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3. '진단금 보험비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 증여세

같은 법 제34조는 보험사고(만기 포함)가 생겼을 때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사고 발생일을 증여일로 보고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요.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

&mode=4&joNo=0034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3400000>)).

국세상담센터 Q&A는 일부만 낸 경우 계산식을 「보험금 ×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낸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로 안내해요. 명목상 수익자와 실제 납입자가 사실상 같은 사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있어요(<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상황	과세 방향	근거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 또는 실제 납부자	상속재산으로 봐요	제8조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만기·사고 보험금 수령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요	제34조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 부분은 별도 계산	제34조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실상 같음	증여세 과세 안 해요	국세상담센터 Q&A

가상 예시예요. 부모(계약자·납부자)가 보험료 1,000만 원을 모두 낸 보험에서 자녀가 만기 보험금 1,200만 원을 받았다면,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달라서 증여 쟁점이 생겨요. 이때 부모가 낸 비율은 100%라 보험금 1,200만 원 전부가 대상이에요. 실제 세액은 증여공제 등을 따져야 해서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4. '상해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고 피보험자 다를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고 피보험자만 다른 구조는,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에서 보험금을 계약자가 받아요. 상해보험 특유의 조문(상법 상해보험 장)은 이번에 원문을 열어 보지 못해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상속 관점으로는 제8조 문구상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낸 경우」만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숨진 경우에도 그 사람이 계약자도 납부자도 아니면 이 조항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읽혀요(조문 문구에 따른 해석이며 개별 사안은 **공식 확인**).

5. 「부모님 사망보험금 수령후 나누는 문제」

국세상담센터 Q&A는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 민법상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공동상속인끼리 자의적으로 합의해 지정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나눠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해요(<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민법 제101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의 협의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나누는 제도예요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민법&mode=4&joNo=1013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민법&mode=4&joNo=101300000>)).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귀속은 상법 제733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제2항·제4항에 규정이 있고,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해요. 약관상 「상속인」의 의미와 나누는 비율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6. 「보험료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시 증여 문제」

이번에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계약자 변경 그 자체로 증여세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직접 설명한 문장이 없었어요. 확인된 것은 아래예요.

- 생명·손해보험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변경 내용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은 명의변경일이 속한 분기 종료일 다음 달 말일이예요. 2014년 1월 1일 이후 변경분부터 적용돼요. 다만 안내문이 시행령 개정 전에 쓰여 현행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8424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84245>)).
- 보험료 납부자와 중도인출금·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중도인출이나 해약 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해요(위 mi=2787 링크).
- 계약자를 바꾼 뒤 누가 보험료를 내는지가 이후 제34조의 판단 기준이 돼요. 변경 시점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7 체크리스트

- 증권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각각 누구인지 확인했다
-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통장 출금 명의)을 확인했다
-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납부자였는지 확인했다
- 수익자가 지정돼 있는지, 「상속인」으로만 돼 있는지 확인했다
- 계약자·수익자를 바꿨다면 변경일을 기록했다
- 보험사 보험금 지급 안내서와 납입 내역을 보관한다
- 세액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했다

8 용어 정리

- **간주상속재산**: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은 아니지만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재산이에요(국세청).
- **피상속인**: 사망해서 재산을 남긴 사람이에요.
- **보험사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유(사망·진단·만기 등)예요.
- **협의분할**: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예요.
- **고유재산**: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의 것으로 취급되는 재산이에요.

9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상속재산여부 문의」: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상속재산인가요?

A. 아니예요.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제 보험료를 냈을 때 상속재산으로 봐요(제8조). 그렇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져요.

Q. 「진단금 보험비 계약자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다른경우」 증여세는요?

A. 보험료를 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르면 제34조에 따라 증여세 쟁점이 생겨요. 낸 비율만큼이 대상이에요.

Q. 「보험료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시 증여 문제」는 바로 과세되나요?

A. 계약자 변경 자체의 과세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변경 신고 의무는 있고, 나머지는 **공식 확인**하세요.

Q. 「부모님 사망보험금 수령 후 나누는 문제」는 자유롭게 나눠도 되나요?

A. 지정수익자의 고유재산을 임의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해요.

Q. 「상해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같고 피보험자 다를때」는요?

A. 상해보험 전용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

Q. 「사망보험 질문!」 타인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을 들 수 있나요?

A. 상법 제73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1조>)상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필요해요.

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08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080000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34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속세및증여세법&mode=4&joNo=003400000>)
- 상법 제731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1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1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100000>)
- 상법 제733조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733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3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상법&mode=4&joNo=073300000>)
- 민법 제101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3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민법&mode=4&joNo=101300000>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민법&mode=4&joNo=101300000>)
- 국세청 항목별 설명(간주상속재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50&mi=652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50&mi=6522>)
- 국세상담센터 Q&A(상속·보험금):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060>)
- 국세상담센터 Q&A(보험금 증여):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2787>)
- 국세청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안내: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84245>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nttSn=84245>)
-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보험 용어: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contentsSln=609&menuNo=300017> (<https://www.fss.or.kr/edu/fec/contMng/view.do?contentsSln=609&menuNo=300017>)



공유

공유하기

카카오톡



링크 복사

네이버 블로그

밴드

X

Facebook

💬 다른 고민 보기 · 🌟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

11 마감 임박 공모전

출처: 루리의 줍줍(sungprofile.cloud) ·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